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일시 ·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의 일시 ·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응시대상

- 응시대상 :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전원 및 제1차시험 면제자 중 원서접수한 자

2 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 일시 : 2022. 7. 1.(금) ~ 7. 6.(수) *7. 3.(일) 제외

- 1교시 10:00~12:00, 2교시 14:00~16:00

나. 시험 장소

- 한양대학교(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직렬(류)별 시험일정 · 장소는 2022. 4. 27.(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가.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붙임)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주(主)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실시합니다.
 -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여지(발열 37.5℃ 이상, 호흡기 증상 등)가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시험 응시**하게 됩니다.(필요시 자가진단 키트 사용)
 - 마스크는 **가급적 방역용 마스크(KF94)**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험실의 **출입문·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할 예정이므로 시험 당일 날씨를 확인하여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 당국의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할 경우 방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등록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 자진신고 등록기간 : 6. 16.(목) ~ 7. 6.(수) / ☎044-201-8259, 8262, 8363

※ 확진자의 별도시험장 세부 응시방법 등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은 방역 당국의 지침,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 반 사 항】

가. 시험 당일 오전 09:30까지(2교시 13: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입실 전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감독관의 허락 없이 시험실을 무단이탈(응시자 안내시간 중에 화장실, 복도 등에서 책을 보는 행위 등)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 전일에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일,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 기간 중 본인의 응시과목에 결시한 수험생은 그 시간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 내역 → 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동영상 및 음악 재생장치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문제지에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으로 표기된 시험과목의 경우 시험시간 중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초기화 하여야 합니다.(초기화 이후 다른 계산기로 교체사용 불가)

※ 직렬(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 시험실에는 시계를 별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고지나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더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 교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다음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제공 신청자 외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간 중 지정된 시간 내에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 흡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표지와 초안작성용지 1매를 포함한 총 9매이며, 답안 작성 부분은 총 10쪽입니다.

나. 답안지에는 문제지에 인쇄된 문제의 순서에 맞게 문제번호를 적고 답안을 가로쓰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문제는 옮겨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 답안은 **답안작성란 안쪽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작성란 이외의 바깥쪽 여백, 답안지 표지 및 뒷면 여백, 초안작성용지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과는 무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7호 참조)

라.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사용하되 **색상, 굵기 등이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나치게 굵기가 가늘거나 농도가 흐린 펜 등은 사본답안지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기구 선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 사용 시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하며, 불량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초안작성용지 포함)**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

※ 특히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안작성용지,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인쇄 되었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가. 제2차시험 합격자는 **2022. 9. 2.(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www.gosi.kr)를 통해 발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단, 통신 사정에 따라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시험 성적은 다음의 기간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성적 확인 기간
제2차시험 불합격자	2022. 9. 2.(금) 09:00부터 1년간
제2차시험 합 격 자	2022. 10. 4.(화) 09:00부터 1년간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

- ▼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시험장은 08:0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권장)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코·입 노출 금지)해야 합니다.
-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양해 바랍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7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